

#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진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정진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김기덕, 김성준,  
김용일, 김원태, 김지향,  
김춘곤, 김형재, 남창진,  
박영한, 박철성, 서준오,  
이상욱, 이영실, 이은림,  
이종태, 임만균, 홍국표  
의원(18명)

## 1. 제안이유

-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(2022.1.11.공포, 2022.7.12.시행)되었음.
-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,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조성, 점검 유지보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바,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4호 신설).
- 나.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·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의2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보행자우선도로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·구성 등)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

2. 속도저감시설
  3.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
  4.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
  5. 장애인 안전시설
  6. 조경시설
  7. 편의시설
  8. 조명시설
  9.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 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에 유지·보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보행자우선도로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.</u></p> <p><u>제17조의2(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·조성 등)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</u></p> <p><u>2. 속도저감시설</u></p> <p><u>3.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</u></p> <p><u>4.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</u></p>

5. 장애인 안전시설

6. 조경시설

7. 편의시설

8. 조명시설

9.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 
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 
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  
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  
된 시설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  
우선도로에 대해 매년 관리 실  
태를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에  
유지·보수를 하여야 한다. 이  
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시  
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보행자  
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·보  
관하여야 한다.